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70060호

「2024년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」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경상북도 및 6개 참여 시·군과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6일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지역자원 활용 사업화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여,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

- 지역사회 문제해결, 지역자원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, 교육·멘토링 등 지원

□ 추진절차

모집 공고	온라인(이메일) 접수 (gepa02@gepa.kr)	서류심사(적격심사)
'24.7.26. ~ 8.19.	'24.8.12. ~ 8.19.	'24.8.20. ~ 8.23. *합격자 발표일: 8.23.

대면심사 자료 제출	대면심사	최종합격자 발표
'24.8.23. ~ 8.26. *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운영	'24.8.28. ~ 8.29. 中	'24.9.2. *협약: 9.3. 이후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협약기간(지원기간)

○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협약기간*(1년 이내)로 정함

* 상기 협약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모집인원

○ **8명**(최대 2명 1팀 신청 가능)

○ 시·군별 모집인원

시·군	모집인원	배정 예산
합 계	**8명**	**160,000천원**
안 동 시	1명	20,000천원
영 주 시	2명	40,000천원
영 천 시	2명	40,000천원
상 주 시	1명	20,000천원
문 경 시	1명	20,000천원
영 덕 군	1명	20,000천원

□ 지원내용

○ 창업지원금: 1인 기준 20,000,000원(1년간 지원)

○ 교육, 컨설팅, 네트워킹 등 지원

2 신청자격

□ **(자격)** 경북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,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, 협약 전(일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)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

ㅇ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

- 생년월일 1984. 01. 02. ~ 2005. 01. 01 출생자('24.1.1.기준)
- 신청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경북도 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함

  *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

ㅇ 개인 또는 최대 2명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함

- 단,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

  * 단, 모집인원이 1명인 지역에 2명 1팀으로 신청한 경우 1명 지원금(20,000천원)만 지원

□ 참여자 제외 대상

① **(중복지원 배제)** 정부, 도 및 시·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및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

-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, 본 사업 및 해당(중복예상)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

② **(경북도민)**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자

※ 도내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타 시도 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 가능

③ **(구비서류 미제출)**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④ **(주소지 미이전)** 사업선정 이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(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)를 해당 시·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

⑤ **(사업참여 의지)**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, 학업(학·석·박사)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

⑥ **(기창업자)** 창업(사업자등록증 보유자)을 지속하고 있는 자

※ 단,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모든 사업장 폐업 가능자는 참여 가능

⑦ **(반복참여자)** 도시청년시골파견제, 청년커플창업지원, 청년창업지역정착 등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

⑧ **(기타)** 지병,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,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

<신청자격에 대한 주요 해석>

① **(유사사업 중복참여자)**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, 타 사업과 지원기간(협약기간)이 중복되는 자

-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, 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·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② **(주소지 기준)** 주소지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**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반드시 외부지역 1인이 포함되어야 함**

③ **(조건부)** 참여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**1개월 이내에 퇴사(폐업)하는 조건**으로 참여 가능

□ 가점대상

○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(택 1)

* ① 사업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② 참여자(2인)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

3 신청방법

□ 신청서류 접수

○ **(접수기간)** 2024. 8. 12.(월) ~ 2024. 8. 19.(월), 13:00까지 제출분에 한함

○ **(접수방법)** 온라인 접수(gepa02@gepa.kr) *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

※ **신청서 접수시 e메일 제목명**: [창업드림]-[신청지역]-[팀명]

○ **(신청 시·군)** 공고문 상 시·군별 모집인원을 확인하여,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함

*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,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 시·군 모두 신청이 취소됨

□ 신청서류

연번	제출서류명	비고
1	**【서식1】** 사업신청서 (확인 서명 포함)	▪ 팀 구성 정보는 **구성원 전원** 명확히 기재 ▪ 사업명(사업팀명)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
2	**【서식2】**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(5매 이내 권장)	※ 신청시 유의사항 ▪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(ex, [창업드림 신청서]-[신청지역]-[팀명]) ▪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(5번, 7번) ▪ 구성원 전원 제출(5~8번) ▪ PDF 파일 제출
3	**【서식3】** 사업계획 요약서	
4	**【서식4】** 사업계획서 (5매 이내 권장)	
5	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(공고일 이후 발급) ※ 발급처: 국세청 홈텍스	
6	**【서식5】**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	
7	주민등록초본 (최근 5년 변동사항 포함) (공고일 이후 발급)	
8	**【서식6】** 참여확인서	

1) 필수기재사항: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e-mail

2)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, 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(PDF)로 제출, 주민등록초본 스캔파일(PDF) 제출

3) jpg,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, 페이지나누기(모아찍기) 금지,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,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

4 선정절차

1 서면심사

○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기존 취·창업 여부, 사업계획서 구비요건(부실, 허위 등) 등의 신청자격 조건 심의

○ 정부, 도 및 시·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및 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조회

2 대면심사

○ PT발표*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,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

-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및 예비 우선순위 배정

* 대면심사 대상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
(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,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)

3 협약 체결

○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(협약일로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)

- **(주소지 이전)**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팀원 모두 주소지를 선정된 지역 시·군으로 이전 필수

- 협약 체결 후 사업화자금 신청 전 **지역자원조사 결과보고서** 제출

* 지역자원조사 결과보고서 미 제출시 사업화자금 지원 불가

5 선정결과 공고

□ 심사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운영기관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지

※ 기선정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후보자 선정

6 지원내용

□ 사업화자금

○ 일반운영비, 상품화개발비, 기자재임차료, 공간 임차료, 홍보비 등 사업화 과정(시제품 개발)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

* 원자재 등 재료비는 '**시제품 개발**'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

□ 교육 및 멘토링

○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

- 참여자는 반드시 **16시간** 이상 교육*을 이수하여야 함

* 온·오프라인 집체 교육, 멘토링, 컨설팅, 네트워킹 등

□ 판로지원 및 사후관리

○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,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, 자원연계, 교육·컨설팅 등 지원

□ 사업비 지원방식

○ **(사업화자금)** 참여자는 사업화계획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

*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

7 기타 유의사항

- ㅇ 참여희망 참여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
-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
-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ㅇ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- ㅇ 최종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-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
-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,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기타 제제사항은 운영지침 참조)
- ㅇ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
- ㅇ 사업 참여자 선정(심사)위원회 구성, 선정결과(점수 포함),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, **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**에 공고 예정

8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

□ 지원제외 대상업종

○ 대상업종

연번	분야	대상업종
1	금융·부동산	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중개업 등
2	유흥접객	무도장, 유흥접객업(주점 등)
3	레저	골프장, 스키장, 갬블링, 베팅업 등
4	기타	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

○ 기 창업자인 경우, 기존업종과 중복 및 비슷한 창업은 제외

○ **프렌차이즈, 단순서비스업 및 카페업, 식당창업은 제외**

9 문의처

□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

○ (연락처) 054-476-5367, 054-995-9945

○ (e-mail) gepa02@gepa.kr

【별첨 제1호】 대면심사표

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선정 대면심사기준

항 목	세 부 항 목	내 용	배점기준	점 수
사업내용 (50)	- 사업목적 이해도	-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?	10	
	- 사업목표 적합성	- 사업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제시하고 있는가?	10	
	- 의지 및 역량	- 구성원(개인별) 지역정주 의지가 있는가? - 구성원(개인별) 역할 및 역량이 충분한가?	20	
	- 사업비 적정성	-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?	10	
기여도 (30)	- 경제적 효과	- 제시한 사업계획이 고용, 매출 등 성과창출 및 가능성이 있는가?	15	
	- 지역사회 기여	- 정주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?	15	
기타 (20)	- 실현 가능성 및 사업 확장성 등	-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? -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?	20	
가점항목		- 지식재산권 5점, 부부구성 5점	5	
합 계 (가 점 포 함)			100 (105)	

【별첨 제2호】 사업비 구성 기준

비목	세목	내 용	주의 사항
사업화 자금	일반운영비	사업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,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*공구, 기구, 비품, SW 등 ① 사무용품(필기구 등) ② 비품 수선 ③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* 물품 보관 및 운송료, 운송 포장비, 법인설립비 등 ④ 공공요금 및 제세(우편, 전화요금, 전기가스요금 등) ⑤ 전문가 자문비용 ⑥ 역량강화비(교육수강료, 세미나 참가비 등) ⑦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소모품	-
	인테리어비	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	
	상품화개발비	시제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용 ① 인증획득비, 특허출원비, 지식재산권확보비 등 ② 외주용역비 ③ 소모성 재료구입비 ④ 기술이전비 ⑤ 시험·인증비	-
	기자재임차료	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물품 임차에 필요한 경비	구입불가
	공간 임차료	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	보증금 지원불가
	유류비	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일러 등 냉난방 시설에 필요한 유류비	-
	강연 및 공연개최비	강연 및 공연개최 시 행사진행에 필요한 강연자 및 공연자 사례비용 및 공연개최 비용 일체	-
	홍보 및 마케팅비	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소요비용 ① 홍보영상제작비, 온라인쇼핑몰 입점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온라인홍보비, 앱(App)스토어 등록비, 카탈로그 제작비, 일간지·신문 등 광고비 ② 전시회 참가비 등	-